

환 경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인제군, 횡성군

관 련 자	① 인제군 ○○○○과	지방○○○○○ ○○○
	② 인제군 ○○○○과(전 ○○○○과)	지방○○○○○ ○○○
	③ 인제군 ○○○○과	지방○○○○○ ○○○
	④ 인제군 ○○○○과	지방○○○○○ ○○○
	⑤ 횡성군 ○○○○과	지방○○○○○ ○○○
	⑥ 횡성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2. 8. 1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3. 7. 4.부터 2015. 7. 26.까지 ○○○○과에서 “○○○○○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 ○○○은 2015. 10.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14. 9.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지방○○○○○ ○○○은 2015. 2. 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6. 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계획과 “리도 00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도로의 노선 지정을 결정·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 부과금액·납부기간 등에 관한 통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 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부서)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기관(시·도)에 통보하고,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강원도 인제군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① 인제군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는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부서로서 2014. 12. 3.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완료되었음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강원도(○○과)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24,664,370원이 부과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소하천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는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부서로서 2014. 12. 15.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가 완료되었음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강원도(○○과)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12,063,000원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의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부서로서 2015. 2. 27. 도로구역 결정이 승인 완료되었음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강원도(○○과)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16,663,500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인제군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및 미부과 현황>

(단위 : m², 원)

사업자	사 업 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시행계획 공고일자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예정금액	
인제군	○○○○ 소하천 정비사업	2015.4.9.	2014.12.3.	48,176	24,664,370	'15.4~'16.11월
인제군	○○○ 소하천 정비사업	2014.12.9.	2014.12.15.	32,362	12,063,000	'15.3~'18.11월
인제군	○○○○○시설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	2014.2.28.	2015.2.27.	45,418	16,663,500	'14.12~'17.12월
					53,390,870	

※ 인제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내용 통보와 관련하여 지방○○○○○ ○○○과 지방○○○○○ ○○○은 실무책임이 있다.

② 인제군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부서로서 2015. 12. 31. ○○

○○○○단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강원도(○○과)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 보전협력금 34,012,800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인제군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및 미부과 현황>

(단위 : m², 원)

사업자	사 업 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자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예정금액	
인제군	○○ ○○○○단지 조성사업	2015.10.20.	2015.12.31.	54,350	34,012,800	'15.12~'17.12월

※ 인제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내용 통보와 관련하여 지방○○○○ ○○
○은 실무책임이 있다.

③ 인제군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문화관광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의 계획을 승인하는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부서로서 2015. 4. 17.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강원도(○○과)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 보전협력금 62,310,000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인제군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및 미부과 현황>

(단위 : m², 원)

사업자	사 업 명	소규모 환경영향 평 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자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예정금액	
인제군	○○○○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2015.12.3.	2015.4.17	51,925	62,310,000	'15.11~'16.7월

※ 인제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내용 통보와 관련하여 지방○○○○○ ○○○은 실무책임이 있다.

2. 강원도 횡성군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① 횡성군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계획을 결정하는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부서로서 2015. 1. 29. 사업계획의 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강원도(○○과)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59,948,200원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리도 00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도로의 노선 지정을 결정하는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부서로서 2016. 5. 12. 도로의 노선 지정 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강원도(○○과)에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고, 약 4개월이 지난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기간(2016. 8. 29.~9. 7.)에 부과대상을 통보('16. 9. 6)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19,015,060원이 부과되지 않았다.

<횡성군 ○○○○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및 미부과 현황>

(단위 : m², 원)

사업자	사 업 명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신일	사업계획 승인일자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예정금액	
횡성군	○○○(○○지구) 지방 하천 정비사업	2015.1.8.	2015.1.29.	64,913	59,948,200	'15.4~'17.4월
횡성군	리도 000호선 (○○~○○) 도로확·포장공사	2015.9.15.	2016.5.12.	57,482	19,015,060	'16.4~'19.12월
					78,963,260	

※ 횡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내용 통보와 관련하여 지방○○○○○ ○○○과 지방○○○○○ ○○○는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제군수, 횡성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부과·징수기관인 강원도(○○과)에 통보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